

#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제54호 |
|----------|------|

제출년월일 : 2005. 9.28.

제출자 : 사천시장

## 1. 의결주문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의2)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시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4. 주요토의 과제 : 없음

## 5. 참 고 사 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산·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5. 8. 19 ~ 9. 1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2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 을 “「지방공무원법」” 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제3항 후단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을 “「재외공무원복무 규정」” 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 근무” 를 “공휴일 등 근무” 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로,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로 하며, 같은조 제2항중 “공휴일” 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 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 제목중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로 하고, 같은조 전단중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 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결혼  | 본인                 | 7   |
| 출산  | 배우자                | 3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lt;신 설&gt;</p>  | <p>제3조(-----) (현행과 같음)<br/> <u>제3조의2(비밀업수)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li> <li>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li> <li>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li> <li>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
|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 <p>제13조(-----)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p>  |
|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는다.</p>                | <p>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
| <p>③ &lt;신 설&gt;</p>  | <p>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p>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 <p>제15조(----- 공휴일 등 근무) ①-----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br/>-----토요일 또는 공휴일의-----<br/>-----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br/>----- 토요일 또는 공휴일-----</p> |      |             |   |             |   |             |    |             |    |             |    |             |    |             |    |       |    |  |
| <p>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 <p>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      |             |   |             |   |             |    |             |    |             |    |             |    |             |    |       |    |  |
|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 <p>&lt;삭 제&gt;</p>   |      |             |   |             |   |             |    |             |    |             |    |             |    |             |    |       |    |  |
|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 <p>&lt;삭 제&gt;</p>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월 이상 6월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월 이상 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 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상 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년 이상 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이상 6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r> </tbody> </table>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3월 이상 6월 미만 | 4 | 6월 이상 1년 미만 | 7 | 1년 이상 2년 미만 | 10 | 2년 이상 3년 미만 | 13 | 3년 이상 4년 미만 |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9 | 5년 이상 6년 미만 | 21 | 6년 이상 | 22 |  |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             |   |             |    |             |    |             |    |             |    |             |    |       |    |  |
| 3월 이상 6월 미만  | 4  |      |             |   |             |   |             |    |             |    |             |    |             |    |             |    |       |    |  |
| 6월 이상 1년 미만  | 7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3년 미만  | 13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5년 미만  | 19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6년 미만  | 21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22   |      |             |   |             |   |             |    |             |    |             |    |             |    |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⑥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li> <li>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li> <li>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li> <li>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li> <li>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li> </ol> | <p>&lt;삭 제&gt;</p>  |
| <p>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 <p>&lt;삭 제&gt;</p>  |
| <p>⑧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가를 얻을 수 있다.</p>   | <p>&lt;삭 제&gt;</p>  |
| <p>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 <p>&lt;삭 제&gt;</p>  |
| <p>⑩ (생 략)</p> <p>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⑩ (현행과 같음)</p> <p>제24조(--- 토요일 또는 공휴일)<br/> -----토요일 또는 공휴일-----<br/> -----<br/> -----<br/> -----.</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p> | <p>&lt;삭 제&gt;</p> |

#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정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3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토요일휴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3월 이상 6월 미만 | 3    |
| 6월 이상 1년 미만 | 6    |
| 1년 이상 2년 미만 | 9    |
| 2년 이상 3년 미만 | 12   |
| 3년 이상 4년 미만 | 1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④공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2006.1.1] 제7조제1항

**제8조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조 (정치적 행위)** ①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제18739호, 2005.3.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